

제438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시 2026년8월31일(월)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 국방부 소관
 - 병무청 소관
 - 방위사업청 소관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89)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90)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38)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39)
-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57)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87)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01)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8)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08)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29)
- 군인 주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80)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83)
- 군인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84)
-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89)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90)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03)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57)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43)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756)

2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70)
2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92)
23.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04)
2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45)
25.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58)
2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96)
27.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21)
2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33)
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17)
3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18)
3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78)
32.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26)
33.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27)
34.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28)
3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99)
36.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31)
37.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58)
3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81)
3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11)
4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51)
4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53)
4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71)
43.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91)
44.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87)
4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07)
4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94)
4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95)
4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01)
49.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09)

5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43)
5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44)
5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68)
5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80)
5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87)
55.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21)
5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71)
5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93)
58.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00)
5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29)
60.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45)
6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53)
6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54)
6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9703)
6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38)
65.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56)
66.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58)
67.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99)
6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42)
6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91)
70.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16)
71.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02)
7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11)
7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13)
7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67)
7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73)
76. 대한민국 국군의 미국-이란 전쟁 및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 반대 결의안(윤종오 의원 등 18인 발의)(의안번호 2217657)
77. 호르무즈 호위연합체 국군부대 파견에 관한 의견청원(이재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86)

78. 육군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 중단 촉구에 관한 청원(윤00 외 53,97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08)

79. 국군방첩사령부의 폐지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박민우 외 54,46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23)

상정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7
 - 가. 국방부 소관
 - 나. 병무청 소관
 - 다. 방위사업청 소관
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89) 7
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90) 7
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38) 7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39) 7
6.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57) 7
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87) 7
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01) 7
9.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8) 7
1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08) 7
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29) 7
12. 군인 주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80) 7
1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83) 7
14. 군인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84) 7
15.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89) 7
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90) 7
1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03) 8
18.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57) 8
1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43) 8
20.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56) 8
2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70) 8

2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92) ...	8
23.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04)	8
2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45)	8
25.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58)	8
2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96)	8
27.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21)	8
2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33)	8
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17)	8
3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18)	8
3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78)	8
32.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26) ...	8
33.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27)	8
34.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28)	8
3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99)	8
36.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31)	8
37.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58)	8
3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81)	8
3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11)	8
4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51)	8
4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53)	8
4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71) ...	8
43.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91)	8
44.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87)	8
4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07)	8
4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94)	8
4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95)	9
4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01)	9
49.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09)	9
5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43)	9

5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44)	9
5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68)	9
5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80)	9
5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87)	9
55.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21)	9
5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71)	9
5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93)	9
58.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00)	9
5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29)	9
60.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45)	9
6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53)	9
6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54)	9
6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9703)	9
6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38)	9
65.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56)	9
66.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58)	9
67.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99)	9
6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42)	9
6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91)	9
70.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16)	9
71.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02)	9
7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11)	9
7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13)	9
7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67)	9
7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73)	9
76. 대한민국 국군의 미국-이란 전쟁 및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 반대 결의안(윤종오 의원 등 18인 발의)(의안번호 2217657)	10

77. 호르무즈 호위연합체 국군부대 파견에 관한 의견청원(이재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86)	10
78. 육군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 중단 촉구에 관한 청원(윤00 외 53,97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08)	10
79. 국군방첩사령부의 폐지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박민우 외 54,46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23)	10

(14시11분 개의)

○위원장 진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오늘 회의 역시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 처리와 함께 법률안 등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가. 국방부 소관

나. 병무청 소관

다. 방위사업청 소관

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89)

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90)

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38)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39)

6.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57)

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87)

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01)

9.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8)

1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08)

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29)

12. 군인 주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80)

1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83)

14. 군인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84)

15.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89)

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90)

1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03)
18.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57)
1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43)
20.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56)
2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70)
2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92)
23.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04)
2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45)
25.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58)
2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96)
27.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21)
2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33)
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17)
3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18)
3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78)
32.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26)
33.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27)
34.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28)
3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99)
36.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31)
37.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58)
3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81)
3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11)
4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51)
4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53)
4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71)
43.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91)
44.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87)
4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07)
4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94)

4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95)
4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01)
49.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09)
5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43)
5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44)
5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68)
5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80)
5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87)
55.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21)
5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71)
5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93)
58.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00)
5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29)
60.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45)
6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53)
6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54)
6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9703)
6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38)
65.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56)
66.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58)
67.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99)
6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42)
69.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91)
70.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16)
71.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02)
7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11)
7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13)
7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67)
7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73)

76. 대한민국 국군의 미국-이란 전쟁 및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 반대 결의안(윤종오 의원 등 18인 발의)(의안번호 2217657)
77. 호르무즈 호위연합체 국군부대 파견에 관한 의견청원(이재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86)
78. 육군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 중단 촉구에 관한 청원(윤00 외 53,97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08)
79. 국군방첩사령부의 폐지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박민우 외 54,46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23)

(14시12분)

○위원장 진성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등 3개 기관 2025회계연도 결산과 제2항부터 제79항까지 78건의 법률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쳤습니다.

김병주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김병주 위원입니다.

강선영 위원, 박선원 위원, 성일중 위원, 유명하 위원, 천준호 위원, 천하람 위원, 황명선 위원 및 본 위원 등 총 8명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 토론 중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8월 24일과 25일 양일간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 우려가 있는 외산 화상회의 장비를 도입한 정보통신 기반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군 지휘통신장비 도입 단계에서 보안 취약성이 우려되는 제품을 검토 및 제한하기 위한 보안성 검토체계를 마련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최근 3년간 집행부진이 반복되고 있는 병영생활관에 대해서는 대관협의를 행정 절차 등 사업지연 요인을 면밀히 관리하여 반복적인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또한 기본급 예산의 이·전용을 통한 감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부서관 인건비에 대해서는 최근 집행 추이와 부서관의 실제 인력 운용률을 예산편성 시 충실히 반영하고 인건비가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반복 활용되는 관행을 개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시정 14건, 주의 23건, 제도개선 22건 등 5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국직부대 등에서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는 등 총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병무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이행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회복귀준비금 사업의 과다 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월 지원단가 등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를 통해 납입금액 증가시키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하

고 시설관리 사업에 대해서 향후 안전점검 용역업체 선정 시 가격경쟁력, 안전점검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용역업체가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등 주의 2건, 제도개선 6건 및 시정 1건 등 총 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방사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성통신체계-II 사업 등에 대해서는 패키지시설사업의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 일정과 예산의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에 대해서는 기종결정 시 성능확인 평가 방식이나 선결 조건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의 성능확인 관련 절차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전력화 지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시정 7건, 주의 17건, 제도개선 11건 총 35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가 소형 자폭 드론 관련 정책감사결과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보고하였으나 정책감사결과에 대해 전체회의 보고절차를 통해 공유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방사청의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사업에 대해서도 정책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성준 혹시 김병주 소위원장님, 소위원회에서 채택한 부대의견, 가지고 오신 부대의견도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김병주 위원 예.

○위원장 진성준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한번……

○김병주 위원 부대의견 5건입니다.

국방부는 GDP 대비 3.5%의 국방비 확대 방침과 관련하여 연차별 재원조달계획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 검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규모 확대에 그치지 않도록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하는 전략적 재원배분 방안을 강구한다.

국방부는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연말 국고자금 소요 집중에 따른 국방비 미지급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금배정·지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미지급으로 인한 거래상대방 피해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한다.

국방부는 다음 연도 완공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 요청 기한을 준수하고 당해연도 완공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을 최소화하여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한다.

육군은 동원참모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동원·예비군 분야 감사를 육군 감찰실에 별도 조직을 편성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방부는 국방부 직속부대 등에서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국방부는 육군장병 등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에 필요한 시설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5건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모두 6건이네요.

○김병주 위원 예, 6건이네요.

○위원장 진성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김병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결산에 대한 토론은 법률안 등의 상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률안 대체토론과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된 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강선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구두로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 오셨는데 아마 지금 참석이 당장 어려워서서 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하십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안의 안전명과 법률안 등의 원문, 제안설명 또 검토보고 등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내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공춘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률안 등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국방부 소관 법안·결의안 및 청원에 대한 검토사항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의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 주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군인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군인의 주거와 복지 및 자녀 교육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군인과 군인가족의 주거·복지·교육 여건 향상을 통해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법률안들은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 등으로 인하여 군인이 겪고 있는 주거 불안과 자녀 교육의 어려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수요자 중심의 지원서비스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군인의 주거 지원과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들은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법을 개정·보완하여 관련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황명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은 국방전력 정책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국방전력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내용입니다.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법률과 행정규칙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산재해 있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력지원체계를 국방전력정책에 포함하여 무기체계와 함께 다루는 경우 전력지원

체계의 운영 유연성 약화 등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0항 및 제39항 황희 의원과 강선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 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을 직종별 인력 수급 여건과 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먼저 황희 의원안은 의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최근 의대생 중 현역병 복무를 선택하는 인원이 증가하는 등 의무장교 인력 확보 여건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른 단기복무 장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강선영 의원안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3항 및 제68항 강선영 의원과 한기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 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의 복무 및 생활 여건을 개선하려는 내용입니다.

먼저 강선영 의원안은 본인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전역하게 되는 직업군인에 대하여 우선 재임용이나 전직지원금 등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직 개편이나 병력 조정 등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전역하는 직업군인의 신분 보장과 직업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과 기준 등 제도의 핵심적인 사항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한기호 의원안은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이미 만 12세 이하로 확대된 점을 고려했을 때 군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육아휴직 제도 간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진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성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률안 등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성환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국방부·병무청·방사청 소관 법안 35건에 대해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군부대 통폐합 등에 따라 발생하는 군유휴지와 그 주변지역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해당 지역은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제한과 개발 지연 등 특별한 부담을 감수해 왔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군부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이나 공동화를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과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종합계획의 제출 대상 및 확정 주체 등 각론에 있어서는 관계부처들의 이견이 존

재하므로 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승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위사업청장이 무기체계·방산물자의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부의 원자재 비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주요국의 수출 통제 강화,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등으로 무기체계의 소재·부품 수급 불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축 대상을 핵심 부품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제61항 황희 의원과 김선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중보건 의사 등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점진적으로 단축되어 온 반면에 공중보건 의사의 복무기간은 1979년 제도 시행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어 공중보건 의료의 편입 지원율과 복무 인원이 최근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중보건 의료의 감소로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의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의무장교 및 다른 보충역 등과의 형평성, 병역자원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유용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드론·로봇 등과 같이 기술 주기가 짧고 전시 대량 소모가 예상되는 무기체계에 대해 새로운 획득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소요 결정 이전에 업체 등의 신청을 받아 시험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제품을 사전인증품으로 관리한 후 군의 소요가 결정되면 선행연구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무기체계의 획득 기간을 단축하고 첨단 민간기술의 국방 분야 진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진성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결산에 관련된 내용과 오늘 상정된 법률안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 없이 신청에 따라 하시는 것으로 하고 토론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때는 가급적 결산과 법률안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혹시 거수해 주실 수 있으겠습니까?

파악해 주시지요.

결산과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입니다.

먼저 손 드신 분이 유영하 위원님 먼저 손 드셨습니다.

유영하 위원님.

○황명선 위원 저 예산결산 가서 ……

○위원장 진성준 가신다고요? 먼저 토론하셔야 되겠다고요?

○柳榮夏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진성준 그러면 먼저 손을 들어 주시지.

○천준호 위원 예결위여서 시간을……

○위원장 진성준 예, 황명선 위원님.

○황명선 위원 감사합니다.

논산·계룡·금산 지역구의 황명선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안이 있습니다. 국방전력정책 기본법과 방위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두 법안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 군의 미래 전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를 견인할 첨단방위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아주 시급한 법안들입니다.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은 국방전력정책의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국방부장관 소속 국방전력정책위원회와 AI 융복합전력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국방전력체계 관리 및 신기술 획득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핵심 법안입니다. 민간 첨단·벤처 중소기업의 방산 분야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방산기술 품질 인증을 획득한 우수기업을 방산혁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수익계약 체결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파격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의견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국방부도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 방사청장님께서서는……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위원님의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중복적인 부분들이 잘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지금 본 위원 지역구에 국가에서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국방산업단지를 최초로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해서 지금 토지 보상 착수하고 곧 착공이 시작됩니다. 그 목적은 방산산업의 집약화를 통해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지요.

국가국방산업단지 가운데서 방산산업단지는 최초인데요. 또 특히 지난번에 방산혁신클러스터까지 선정돼서 그 시너지 효과는 아주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국방산업단지는 사업의 주체가 국토부고 또 지금 LH가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방부와 방사청과 국토부가, LH가 지금 협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가산업단지처럼 토지를 만들어 놓고 그냥 기업들한테 분양하는 형태의 공고를 내서 한다는 것은 국가국방산업단지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산혁신클러스터가 이번에 저희 논산이 지정됐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체계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로봇 분야입니다, 로봇 분야. 특히 대전에 드론도 있고요.

그래서 국가방산산업단지의 목적에 맞게끔 뭔가 논스톱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사청에서의 준비 그리고 국방부·LH와의 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우선 국방산단의 경우에는 저희가 주무부처가 아닙니다만 국토부와 정책적인 협의를 잘해서 저희가 주관하고 있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과 사이에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원활하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좀 속도감 있게, 제가 국방위에 와서 계속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속도가 안 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국토부장관한테 여쭙었더니 실질적으로 이게 협업관계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게 다부처 사업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회의체도 구성을 하고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예.

덧붙여서 제가 질의했던, 얼마 전에 질의했었습니다만 국방부에 국직부대가 29개가 있습니다. 훈련과 꼭 서울·수도권에 있어야 될 목적에 맞는 부대라고 하면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이외의 연구나 기타 홍보나 다양한, 서울·수도권에 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대 같은 경우는 저는 지방에, 특히 논산·계룡 같은 경우는 국방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이번

에 공공기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전은 혁신도시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취약한데 이러한 국직부대를 이전해서 여기 서울·수도권에는 주택을 공급하고 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기대효과, 국방부 관련된 기관들을 함께 두면 혁신클러스터, 국방클러스터의 효과까지 저는 거둘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장관님 의견을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지역경제나 또 우리 국방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황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성준 황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영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柳榮夏 위원 장관님, 지금 군의관 수급이 괜찮나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잘 못 들었습니다.

○柳榮夏 위원 군의관 지금 수급이 원활한지를 여쭙었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군의관 수급이요?

○柳榮夏 위원 예.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시다시피 복무기간이 병사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柳榮夏 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황희 의원 법률 말고도 여러 분들이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의관 복무기간을 훈련기간 포함해서 24개월로 줄이자 이런 의안들이 많이 발의된 것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알고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군의관 수급계획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데 현행 체제에서 1년 이상 이렇게 줄였을 경우에 군의관 숫자를 어떻게 보충시키려고……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금 대체복무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게 이런 겁니다. 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이, 이렇게 군의관 숫자가 줄어들면 군에서 아마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진료를 많이 활용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부담이 가능한 가정에서는 어떻게든 우리가 부담을 할 테니까 우리 아이를 민간병원으로 위탁치료를 시켜 달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경제적 능력이 안 되신 분들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두 번째, 군의관은 평상시에도 필요하지만 유사시, 전시에 군의관 확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동원령을 내리면 군의관 확보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군이 갖고 있는, 군의관들이 일반 민간병원과…… 특출한 게 총상에 대한 치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게—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생들 다 군의관 출신이지만—이게 36개월, 지금 현재는 36개월에다 훈련기간 3개월 포함시킵니까? 시켜서 36개월은 분리해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분리합니다.

○**柳榮夏 위원** 39개월이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래서 이 3개월 따라서 1년 정도 차이가 나더라, 나중에 레지던트를 가든지 전공의 가든지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급격하게 이렇게 1년 이상을 줄여서, 지금 의안 발의를 보면 훈련기간 포함해서 24개월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 21개월을 군의관으로 복무한단 말이에요, 훈련기간 3개월 빼면. 그랬을 경우에 지금 36개월에서 15개월 정도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柳榮夏 위원** 그러면 그 인력 수급 갭이 저는 굉장히 안 된다. 그런데 물론 의대생들이 1년 마치고, 예과를 마치고 18개월 의무병으로 가서 의무 안 가도 그냥 자기네들은 병원으로 갔다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와서 나중에 군대를 마치고 자기들이 보드(board)를 따서 계산해 보니까 훨씬 이게 이익이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국방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너무 저는 안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장관님 혼자 책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특히 군의관의 수급계획은 병사들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전체 군의 사기에도 저는 연관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체제, 39개월로 가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보지만 그렇다고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하거나 또 대한의사협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24개

월로 줄이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줄여도 점진적으로 감축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조금 선제적으로…… 여기에 관련 당사자들이 현재 의대생들이고요 또 전공의들이고, 지금 현재 개업하고 있는 사람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의협 사람들은.

그렇지만 이 당사자들하고, 국방부에서 여기의 전문가들하고 지금 인력 수급계획하고 이들이 갖고 있는…… 의사들이, 우리 사회에서 유일하게 직업 뒤에 선생님 호칭이 의사 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단지 돈을 버는 근로자 같으면 저희가 존중은 안 하지요. 생명을 다루는 의사기 때문에 저희가 선생님이로 호칭을 하거든요. 그래도 의사로 가지고 있는 소명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 다 내팽개치고 나는 그냥 내 돈 벌기 위해서 복무 단축시켜 달라 이것을 그냥 국가에서 받아 주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를 열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현재 추세대로 24개월 줄이면 저는 안 된다고 보니까 국방부에서 조금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柳榮夏 위원 지금 의사협회에서 각 국방위원들한테 굉장히 로비가 심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거든요, 당신들한테 선생님 호칭을 붙이는 국민들의 생각을 하고 마냥 돈벌이하는 그런 생각만 갖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개인적 의견을 드려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장관께서 좀 더 각성을 하시고 군의 의견을 모아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싶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의사, 학군, 전문요원 등 대체복무와 관련해서 복무기간에 상당히 차이가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대책을 세워서 곧 발표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유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저는 사실은 장관님이 금방 대답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25년도 결산심사를 하면서 느꼈던 말씀을 드리고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가 승인한 것과 다르게 집행하는 예산의 규모가, 좀 다르게 많이 집행된다. 국방부는 지난해에 이용·전용, 내역 변경, 세목조정, 사고이월로 약 1조 3574억 원을 국회가 편성한 것과 다르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전용, 그러니까 이용하고 전용한 내용만 보면 2023년에 3000억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6839억 원, 약 2배 정도 이·전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전용은 기재부 지침에 명시된 합법적 수단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단을 너무 과용하게 되면 국가재정법상의 예산의 목적…… 사용금지를 위반하게 됩니다. 장관님께서 국방위에 오래 계셔서 국방부가 이렇게 하는 게 주특기라고 지적한 것을 제가 속기록에서 찾았습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장관님 계신 동안에 이게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의 예산편성, 심의 의결 권한에 대한 도전이고 사업관리 부실과 회계질서 문란의 장이 마련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발의하도록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에 보면 분석평가체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8조에 보면 분석평가 업무수행을 위한 부서 및 기관별 임무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감사 결과를 분석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평가 담당 부서에 통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계획예산관실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력운영사업 분석평가서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우 단어가 복잡한데.

25년도 전력운영사업 분석평가서를 살펴봤더니 저희 의원실에서 국회의 결산심사 심의 안전과 같은 내용으로 지적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자체적인 감사의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대부분 KIDA에서 의뢰받은 사업타당성 검토 내용, 각 군 분석평가단에서 검토한 비용분석·효과분석 이런 것만 있고 자체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이러한 사업관리 부실 문제나 이러한 내용의 검토를 자체감사 기능이 지금 많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육군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자체감사 활동에서의 독립성 보장을 무시하고 동원감사부대가 행정부서이면서 스스로 자신을 감사하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동참부는 스스로 지침도 만들고 예산도 편성도 하고 집행도 하는데 결과를 감사를 자신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PPBEES, 기획·계획·편성·집행·평가 5개 단계를 1개 부서에 하는 유일한 부대가 육군 동원참모부입니다. 국방부는 이 평가 기능이 지금 없습니다.

세 번째는 전반적으로 사업관리가 부실합니다.

결산심사에서 심의한 국방부 소관 분야 일반회계 총 52건 중에 42건, 81%가 사업관리 부실로 지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도 군사통합정보체계 1개 사업을 하다가 사업관리를 잘 못해서 1개 사업으로 패소해서 583억 원의 배상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방사청도 25년도 10개 사업에 대해서 2673억 원의 패소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사실 사업담당자가 다른 부서의 일을 하다가 사업관리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소송에 대해서도 스스로 이것을 다 해결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데 법률 지원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사업담당자들 다들 소령·중령인데 우리가 어제 야전에서 지휘관하고 전투부대에 있다가 언제 이런 법률에 대해서 명확히 해서 소송을 제기한 그런 업체와 대응해서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방부가 예산하고 사업하는 데 굉장히 큰 부서기 때문에 업체와 분쟁이 있을 것을 생각해서 사업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서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국회 법제처가 각 의원실 법안 발의하면 검토해 주듯이 각 사업부서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제안요청서 작성, 시장조사, ROC, 법률 검토 제안서 평가를 하는 그러한 법률적인 지원부서가 필요할 것 같다, 육해공군하고 국방부에.

그래서 기획관리 전반의 업무 연속성도 보장하고 법적 행정소송도 최소화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부분을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업관리의 안정성을 보장해 줘야 이것을 하다가 처벌받는 사람도 줄어들 것이고 패소비용도 줄지 않겠나 이러한 제언을 드립니다, 장관님.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결재란에다

가 법무관들이 따로, 같이 공동책임을 지는 그런 참고사항으로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전용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남북관계가 급박하게 변했을 때 또 예기치 않은 사건·사고가 있을 때 이런 데 불가피한 경우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점들을 잘 준용을 해서 철저히 예산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선영 위원 장관님, 방사청에는 사업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법조인들이 많은데 일반 육해공군의 법조인들은 그런 업무가 아니고 그런 송무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안서를 내는 단계에 법률 검토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이 걸렸을 때 그 사람들을 사업관리와 관련해서 법률적 지원을 못 해 주니까 나중에 패소해서 몇천억씩 국고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은 방위력 개선 말고 전력지원체계, 육해공군이 하는 전력지원체계도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40억 정도 중에 인건비 빼면 몇십억 되니까 전력지원체계를 지원할 각 군 본부에 법률지원단을, 사업관리를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런 건 의사향을 드리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잘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주 간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장관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공식적으로는 마지막일 것 같은데 특별한 게 있으면 또 열리고요. 문민장관으로서 아주 초기에 내란 청산 여러 가지 과제가 많았고 개혁과제도 아주 많았고 핵추진 잠수함 등 아주 큰 굵직굵직한 일을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따 위원장님은 안규백 장관님께 소회나 이런 말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형 자폭드론 두 차례 실패라고 언론에 났었는데 2026년 8월 25일 날 부산 남방 해상 마라도함에서 진행된 해군 자폭용 드론 해상 운용 검증 간에 자폭용 드론이 발진한 후에 바로 바다에 추락했다라고 나오는데 이런 사례가 몇 차례나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김병주 위원 방사청장이 잘 아시겠네요.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구체적으로 그런 전례들이 몇 차례 있는지 미리 조사하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흔한 일은 아니고 이번 경우에도 지상에서의 핵심기술은 완료가 됐고 기술도 확보한 상태인데 추가적인 기능들을 더 확인할 목적으로 해상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미비한 점이 좀 생겼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이 자폭용 드론은 지상에서 발사되는 겁니까, 원래가?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원칙으로는 핵심기술의 원래의 목적은 지상에서의 핵심기술 확보가 목적이었는데 그걸 해상에서도 확장해서 쓸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무인 수상정을 타격하는 전투실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크라이나-러시아전에서 보듯이 아주 필요한 거니까 지금 이대로는 전력화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완전성을 갖도록 추가 이런 실험을 또 할 거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예, 최대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호도, 또 자폭 드론이기 때문에 대단히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실험을 거쳐서 전력화가 돼야 되겠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장관님,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메가프로젝트 아주 야심 차게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제1전투비행단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려면 무안공항이 빨리 조기에 착공돼서 되어야 되잖아요, 대체할 수 있는. 그거 지금 지난번에 무안으로 확정됐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이전 후보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김병주 위원 확정 최종 됐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김병주 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쯤 들어갑니까, 언제쯤 끝나고?

○국방부장관 안규백 공사는 지금 광주공항 이전하고 동시에 삼을 떠야 된다는 것이 국방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전남광주시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협조해서 무안공항에서 빨리 군공항이 돼야만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 좀 그렇게 돼야만이 되고.

그러면 1개 전투비행대대하고 2개 교육대대들이 분산 배치하는데 사실 분산 배치하려는 후보지에서도 민원들이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경북 예천 같은 데도 보면 임시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2~3년 임시로 배치하는 기간을 최대한 줄여야만이 그 지역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그 부분이 절대적인 또 공사 기간과 시간이 필요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안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그것을 빨리 착공하고 공사를 완료해야만이…… 나머지 3개 지역은 임시이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제 32년 12월 달까지 마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32년?

○국방부장관 안규백 12월 달까지.

○김병주 위원 12월로? 상당한 기간이 걸리네요. 왜 그렇게 많이 걸리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보안상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군공항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 과정보도 있고 또 매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사항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다음에 한미일 공동운영기지 이거 협의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COB에 대해서는 미 측과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 상당히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병주 위원** 장관님이 또 이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최대한 속도감 있게 되게 좀 노력을 해 주고 후임자한테 인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성준** 지금 토론하실 위원님이 두 분 계시는데 성일종 위원님과 임종득 위원님, 혹시 결산과 직결된 주제가 아니라면……

○**임종득 위원** 결산입니다.

○**위원장 진성준** 결산부터 의결하고 토론을 진행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임종득 위원** 좋습니다. 빠지는 사람 있으면 먼저 하셔도 돼요.

○**성일종 위원** 괜찮습니다. 관련이 되는데 먼저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진성준** 결산 의결부터 해도 되겠습니까?

○**성일종 위원** 관련이 되는데 먼저 하시고……

○**위원장 진성준**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성일종 위원** 장관님,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해서 공사에서 다 통합을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사관학교 통합 문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일종 위원** 예.

○**국방부장관 안규백** 사관학교 통합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밟고 있고 또 통합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국방부에서 말씀하실 때, 얘기할 때 창설의 목적이 국군장교로서 정체성의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성일종 위원** 지금 해사·공사·육사에서 갖고 있는 정체성 교육 중에서 빠진 부분이 뭐가 있지요?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합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규모의 경제,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사관생도들을 합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교육의 효과에 기여를, 낼 수 있다 그리고

미래전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전자기, AI 비롯해서 최첨단……

○**성일종 위원** 그러면 지금 육사나 해사·공사의 미래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나요? 지금 현재 그 학교의……

○**국방부장관 안규백** 빠지기보다도 이제 아시다시피 특정 군으로는 전쟁할 수 없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의 다영역 작전이 세계적인 흐름이고 전쟁의 패러다임의 변화인데 그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성일종 위원** 아니, 지금 정체성이라고 그랬어요, 정체성. 미래전을 대비하는 거는 좋은데 정체성이라 그랬거든요. 지금 이 정체성과 합동성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공사나 육사나 해사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통합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없어서가 아니라 정체성이라는 것은 학교, 교육, 정예장교 양성에 있어서의 어떤 합동성에 기반한 사관학교 생도들의 정체성을 더 확립시킨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지금 도저히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의 여러 가지 보면 국가방위에 헌신할 수 있는 육군의 정예장교 육성을 하고 자유민주주의 헌신에 기초한 국가관 확립, 위국헌신과 군인정신, 리더십 함양, 첨단 군사전문지식 습득 및 활용 능력 배양, 창의적·통합적 문제해결능력 배양,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 연마, 여기에 해군사관학교의 산업혁명 및 AI 시대에 맞춘 과학기술을 인도할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전략가, 다 이런 사람들을 양성하겠다고 여기 다 있습니다.

정체성 확립을 한다 그랬는데 도대체 지금 우리 육사·공사·해사의 정체성 이보다 더 잘돼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나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국민들이……

지금 육사·공사·해사의 교육하고 있는 학교이념이나 교육방침에 있어서 정체성 빠진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군사관학교 창설 목적이 국군의 정체성 확립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뭐라 그랬느냐, 쿠데타를 세 번 했기 때문에 이 학교를 놔두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말에는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대통령님 말씀을 제가 논평하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일종 위원** 논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지요. 지금 장관님께서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에 이런 다 통합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이야기가 또 틀린 게 어떤 게 틀리느냐, 대부분이 통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통합하고 있는데 스물두 번의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태국 같은 학교도 그러면 이런 나라도 이걸 다 지금 다시 또 분리…… 여기 통합해서 하고 있는 건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과 맥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일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위원** 아니, 그러면 왜 다른 나라들, 통합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을 왜 예시로 듭니까? 안 맞잖아요.

지금 정체성 이야기하는 것도 다 이 안에 들어 있어요, 3군사관학교에. 그렇지요?

1분만 더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안규백 정채성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사관학교 통합의 여러 부분 중에 하나지……

○성일종 위원 지금 다 여기에 정채성…… 아니, 장관이 장관으로서 정확하게 봐 보세요. 육군사관학교, 이 3사관학교에 있는 교육지침이나 이념 모든 방침들에 하나라도 대한민국 정채성과 어긋나 있거나 빠져 있는 게 있는지.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통합을 하는 목적이 쿠데타라 했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태국의 쿠데타 한 거는 뭐라고 그럴 거냐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우주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 보셨지요? 우주에서 2등이 된다면 지구에서 1등 국가가 될 수 없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우주군도 여기에도 다 통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도 우주군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런데 무슨 이 잘 되어 있는 사관학교를 통합한다는 얘기에요?

장관님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라도 제대로 검토해서 대통령한테 다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임종득 간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 장관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감사합니다.

○임종득 위원 남은 기간 동안 확인 좀 하시고 마무리를 좀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세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국정감사 시에 제가 증인채택을 해서 군복무 중 두 팔을 잃은 나형윤 예비역 중사 이야기를 했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그……

○임종득 위원 제가 지적하고 5개월 후에 제가 다시 질문했을 때 그다음에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국방부에서 움직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장관님에게 질문을 드렸었고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 이후에 조치한 내용만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분하고도 통화가 돼서 아마 그분한테 여러 가지 실질적 혜택이 가는 걸로 그렇게 아마 합의를, 얘기를 하고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임종득 위원 어떤 혜택을 말하셨지요? 제가 보고받은 거는 없습니다. 어떤 혜택을 준다는 거였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재해보상법을 개정한 걸로 그렇게 확인했다고 그러니까.

○임종득 위원 그거는 제가 우리 사무실에서 이번에 올라온 법안에 지금 한 거고요.

○위원장 진성준 관련 국장 나와서 보고하십시오.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위원님의 관심 사항이어서……

○임종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법률안 개정안은 저희 사무실에서 국방부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제출하겠다, 그 문제를 법률안으로 국회의원 입법을 하겠다고 했고요. 좋지 않은 게 그걸로 끝날 수가 없어요. 법안은 당연히 지금 바뀌어

저 가지고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한 석 달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시……

○임종득 위원 시스템에 지금 큰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와 유사한 지금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스템을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잘못된 사람이라든가에 대한 문책의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체크해 주시고.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석 달 전에 그걸 확인했습니다.

○임종득 위원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번 확인하시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알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국정감사 때 제가 다시 이거는 확인을 할 겁니다. 분명히 확인하는데 장관님도 인수인계를 좀 잘해 주셔서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 예비역 부상 장병들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관심 가져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 부분에서 이론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두 번째는 방금 성일종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여론이 만만치 않아요. 아마 장관님도 아실 겁니다. 오늘도 사실 시민 단체 82개 단체, 예비역 단체 51개 단체가 14시에 지금 국회 대회의실에서 발대식 및 결의대회를 하고 있어요.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눈을 가리려 그래도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그랬듯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자꾸 이야기하시고 직언을 못 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이 잘못 판단할까 봐 걱정이 돼서 장관님이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여론의 정확한 팩트를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알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지금 의대 출신들이 병으로 입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군의관이 많이 부족하고 그와 관련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대한민국 의료협회에서도 많이 뛰고 있고요. 여야 위원들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복무기간 단축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께서도 단순한 24개월 단축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조금씩 단축하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다른 의견들이 많아요. 그런데 단순히 의사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한의사도 있고요 수의사도 있고 그다음에 그와 유사한 직군인 군법무관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방부에서 주체적으로 장단기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복무기간을 어떻게 조정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인지, 단기적인 대책만 가지고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한 제정법 중의 하나인 의무사관학교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조금 전에 성일종 위원님께서도 그 분야를 말씀하셨는데 학사·학군 그다음에 특수사관 이런 것들을 정책의 효율성을 더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복무기간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까지는 어느 정도 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출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토론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성일종 위원장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면 3분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장관님, 광주공항에 반도체를 하게 되면 지금 거기에 훈련하는 부대를 다른 부대로 옮겨야지요, 그 병대들을?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서산공항의 1개 대대, 예천공항의 1개 대대를 T-50으로 옮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옮긴다고 할 때 이게 소음피해가 아주 막중한, 굉장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거나 동의를 받기 위해서 협의체라도 한번 방문하거나 상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금 TF팀을 구성하고 있고 어차피 어느 비행장을 가든지 간에 소티(sortie)는 제한이 돼 있습니다.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소티의 일정량을 늘릴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성일종 위원** 그러면 지금 서산비행장 같은 경우에 한정되어 있는 소티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전투비행단의 훈련을 축소해야 합니다. 맞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일정 부분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일종 위원** 아니, 그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최소한의 훈련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횡수를 보장해 줘야지 새로운 대대가 들어와서 지금 훈련하는 횡수를 줄이고 이것을 또 하겠다, 이걸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래서 무안공항을 조기에 착공해서 빨리 준공하려고 계획 잡고 있다는 말씀도 동시에 드립니다.

○**성일종 위원** 또 이게 지금 졸속인 것이 이러한 큰 국책사업이 있으면 지역의 지역주민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요. 그 과정이 생략이 되고 지금 현재 메가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발표해 놓고 이 비행단을 옮겨야 될 문제가 생겼다 보니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겁니다. 맞지요? 그러고 나서 지금 뜯어고치고 있는 거예요, 끼워 맞추고 있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직 무안공항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작업도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아니, 무안공항도 안 됐고 안 되다가 보니까 예천으로 2개 대대, 서산으로 1개 대대를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 서산비행장에 있는 약 80여 대의 훈련 소티가 있는데 이것을 줄여서 훈련 소티로 이것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기간 횡수만큼을.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보통 우리 군이 필요한 시간이 약 110여 차례 정도, 110시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범위 내에서 상호 융통성을 가지고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하여튼 지역주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장관님께서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법률안심사소위원장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시면서 심사소위원회에서의 심사과정에서 소형 자폭 드론과 관련해서 국방부의 정책감사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었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 방위사업청의 전술정보통신체계 사업에 대한 국방부의 정책감사를 요구하는 문제도 의논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안에 대해서 우선 양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해 주시고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전체회의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방금 법안심사소위원장이라고 그랬는데 저기 잘못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조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진성준** 죄송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오늘 의결된 결산과 관련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을 의결하면서 첨부한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해서 지체 없이 처리하고 또 그 결과를 국방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결산과 관련해서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규백 국방부장관께서는 아까 김병주 간사위원의 말씀처럼 소회도 곁들여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군의 애정과 관심으로 국방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을 세심히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국방 재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부재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국방에 대한 끊임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성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더…… 그러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약 18년 가까이 국방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 자리를 오늘 마지막으로 떠나려고 하니까 참 국회의원이자 장관으로서 만단정회가 엇갈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국민주권정부의 첫 문민장관이자 국방부장관으로서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하루하루가 고통의 시간이었고 또 내란 종식 과정에서 눈에 밟히는 장군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시간들도 아주 파노라마

처럼 있었습니다.

저는 첫 출근부터 지금까지 오늘이 마지막이다, 인간은 누구나 내일이 없는 오늘이 오는데 내가 내일 그만두더라도 오늘까지는 군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벌써 1년 2개월이 돼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복잡한 마음이고 또 감정을 억누를 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전작권 회복 또 50만 드론전사, 군구조 개편, 방첩사 해체, 정보사 여러 가지 분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진척을 봐 왔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장관후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바통을 넘기고 여기 계신 국방위원님과 함께 이제는 제가 을의 입장이 아닌 같은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군 복무시절에 있었던 얘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마는 제가 최소한 입대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달만 지나면 면제인데, 신검 받고 3년이 지나면 면제인데 제가 11월 달인가 마지막으로 주소를 바꿔서 신병교육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제 발로 들어간 건데 그때만 지나면, 왜냐하면 신검 받고 3년 지나면 면제인데 제가 제 동생뻘 되는 인원들하고 같이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위원님 여러분들의 너른 이해와 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20여 년 가까운 정상 동안 꿀과 젖이 흐르는 상임위도 아니고 국방위의 활동을 하면서, 그것도 서울 사대문 안에 지역구가 있고 지방 접경지역도 아닌데 다른 어떤 마음으로 제가 국방위를 일관되게 했겠습니까?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물러나면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국방부장관을 1년 2개월 시간 동안 많이 보살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와 질책도 같이 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마음으로 삼겠습니다.

특히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흥망성쇠가 있고 불의를 거울로 삼으면 미래가 보인다고 합니다. 개인을 거울로 삼으면 득실이 보인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자세에서 사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초선의원 시절에 안규백 장관님하고 국방위원이 되어서 4년 동안 함께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새삼 장관님 말씀을 들으니 가슴도 뭉클해지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장관직을 떠나셔도 이 나라의 국방과 안보를 위해서 더 크게 역할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홍소영 병무청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홍소영 존경하는 진성준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병무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제도 개선으로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2025회계연도 방사청 소관 결산 의결 및 법률안을 상정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유념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법률안 심의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성실히 심의에 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 및 법안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위해서 바쁜 와중에도 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여러 차례 개최해서 심사하는 등 충실한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을 통해서 정부의 예산집행의 전용과 실패가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측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정책 제안에 대해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또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9항까지 74건의 법률안, 1건의 결의안, 3건의 청원은 더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규백 문민 국방부장관님, 홍소영 병무청장님, 이용철 방위사업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진,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강선영 김병기 김병주 김성회 성일중 송영길 유영하 유용원 임종득 진성준
천준호 천하람 한기호 황명선

○청가 위원(1인)

김민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전문위원 문성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장관 안규백

차관보 원종대

기획조정실장 김은성

국방정책실장 김홍철

인사복지실장 김성준

기획관리관 오성식

법무관리관 이광표

감사관 김신숙

국방개혁기획관 차원준

정책기획관 우경석

방위정책관 최용삼

국제정책관 김학조

인사기획관 이인규

예비전력정책관 김선봉

보건복지관 성기욱

군사시설국장 천승현

전력정책국장직무대리 김경환

정보보안정책관직무대리 홍순정

군수관리국장 이갑수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 전준범

군인권개선추진단장직무대리 김미성

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박승홍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정철재

국방보좌관 유희승

정책관리담당관 박동걸

합동참모본부

차장직무대리 강동구

육군본부

참모차장 최장식

해군본부

참모차장 조충호

공군본부

참모차장 박기완

해병대사령부

부사령관 김 헌
 병무청
 청장 홍소영
 기획조정관직무대리 전재천
 병역자원국장 정재숙
 입영동원국장 최정효
 사회복지국장 서승일
 방위사업청
 청장 이용철
 기반전력사업본부장 정재준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정기영
 기획조정관직무대리 김경호
 방위사업정책국장 정범승
 방위산업진흥국장 이형석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윤창문
 항공기사업부장 강성권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직무대리 고덕곤
 국방기술품질원
 원장 신상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손재홍

【보고사항】

○의안 회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21.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91)

8월 24일 회부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24.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3)

8월 25일 회부됨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25.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4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25. 김병주 의원·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6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25. 김병주 의원·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62)

이상 3건 8월 26일 회부됨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26. 김병주 의원·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85)

8월 27일 회부됨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27.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835)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

(2026. 8. 27.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83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27.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848)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27.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857)

이상 4건 8월 28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제출일
대통령령	제36598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	2026. 08. 24.
대통령령	제36599호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	2026. 08. 28.
대통령령	제36600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 병무청	2026. 08. 25.
대통령령	제36601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 병무청	2026. 08. 25.
국방부령	제1219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	2026. 08. 21.